

# 신정2-2구역 호반써밋 목동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 2020.04.29.)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7.23.(화)	2024.07.29.(월)	2024.07.30.(화)	2024.08.02.(금)	2024.08.05.(월)	2024.08.09.(금)

##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할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할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준공된 아파트로서 견본주택운영이 종료되었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된 동호수의 방문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호반써밋 목동」 아파트는 **건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vertium.hobanapt.co.kr/hobansummit-seoulsj/final/emh/emodelhouse2.asp>)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23.(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43**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4.10.(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0416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7.29.(월)	2024.07.30.(화)	2024.08.02.(금)	2024.08.05.(월)	2024.08.09.(금)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2층)</li> </ul>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 2020.04.29.)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 5320호(2024.07.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150-4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9층 7개동 총 407세대[조합 97세대, 보류1세대, 임대 71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238세대의 계약취소주택 2세대 **[기관추천특별공급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잔금납부 시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개시일 2022년 03월 12일]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2024930043	01	084.9828B	84B	84.9828	22.4022	107.3850	64.8501	172.2351	45.41	2	1	1
	합 계									2	1	1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1	1
국가유공자		
합 계	1	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분양대금	계약 시	2024.10.11
084.9828B	0206	0603	452,157,000	346,143,000	798,300,000	79,830,000	718,470,000
	0206	1103	452,157,000	346,143,000	798,300,000	79,830,000	718,470,000

- ※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볼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관 알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은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이자, 관리비,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확장시 제공 품목 현황

(단위 : 원)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2024.10.11	
084.9828B	0206	0603	14,800,000	1,480,000	13,320,000	
	0206	1103	14,800,000	1,480,000	13,320,000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부 공사내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 및 품목 현황

(단위 : 원)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2024.10.11	
084.9828B	0206	0603	1,100,000	110,000	990,000	현관중문 슬라이딩 도어 *무상선택옵션 : 주방김치냉장고장 상부수납장 하부 오픈형
	0206	1103	9,880,000	988,000	8,892,000	현관중문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 에어컨 고급형 3안 (거실+주방+침실1,2,3 설치) *무상선택옵션 : 주방김치냉장고장 기본형 (도어+내부시스템 선반)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자재의 주문·제작 및 공사가 진행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별 세부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V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b>접수일시가 빠른</b> 당첨건은 유효하며, <b>접수일시가 늦은</b> 당첨건은 <b>무효</b>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b>부적격</b>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ul>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li> <li>-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ul>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b>서울특별시</b> 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b>서울특별시</b> 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li> </ul>
-------------	---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4.08.02.(금) ~ 2024.08.11(일)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4.08.02.(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아파트 계약용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
	○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기록대조일 : 출생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보훈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당첨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대리인 도장	대리인	

■ 계약시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증	본인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아파트 계약용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접수장소 비치
		○	추가 개별통지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발급용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24.08.02.(금)</li> <li>확인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li> <li>- 2024.08.09. (금) (10:00~16:00)</li> <li>장소</li> <li>-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2층</li> </ul>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본 주택은 준공된 아파트로서 견본주택운영이 종료되었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된 동호수의 방문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파트 계좌와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좌가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급대금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393301-04-061267	신정2재정비축진구역2지구주택(외2명)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옵션 품목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86801-01-008550	(주)호반건설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대금별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수납이 불가하며(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506동2101호 홍길동 → 50621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대금은 지정된 각각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납부기일 내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분양대금 대출 알선은 없으며, 모든 분양대금은 자납하여야 합니다.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 공급방법**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이나 부적격자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만 유선 및 문자로 통보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서류검수를 통보 받은 경우 예비 당첨자 검수일(별도 통보)에 서류 제출하여 검수 받아야 하며 서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900% 선발하므로 서류검수 요청은 미달된 주택형의 예비당첨자 선순위 일부에게 통보하며, 선순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류검수 및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li> <li>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li> <li>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li> <li>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li> </ol> </li> <li>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li> <li>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li> <li>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li> </ol> </li> </ol>

### ■ 단지 외부 여건

-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근린공원, 소공원, 연결녹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단지 북측 위치한 신정2-1지구 아파트(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서측 위치한 소공원 및 다세대/연립주택, 동측 위치한 로마 아파트, 남측 위치한 공원, 초등학교, 교회 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소음, 일조, 조망 등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본 사업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비행항로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 내부 여건

-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건립된 인근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또는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보육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201동 북측에 1개소, 203동 북측에 1개소, 204동 북측에 1개소, 207동 북측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상 램프 2개소에서 진출입 가능하며, 지하1층은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고 주차장의 경우 203, 204, 205, 206동 이용 가능하며, 지하2층 주차장은 202~207동, 지하3층 주차장은 전 동 이용 가능함.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적용으로 세대마다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가스보일러 특성상 온수공급 시 순간적인 온도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 구조물, 단열재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차량 출입구는 단지 북서측(202, 207동 사이)과 남동측(205, 206동 사이)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207동 인근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2층 207동 전면부에 위치하여 아파트 진출입로 등을 공유하고 있어, 외부인 이용에 따른 혼잡,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07동 측면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상가 주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207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이용 및 외부 통과동선 설치로 이용에 따른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는 202, 207동 사이 1개소, 205, 206동 사 1개소 설치되어 차량이동에 따른 소음, 불빛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 시야가 간섭되고 조망이 제한됨.
- 202, 203, 204, 206, 207동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로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201동 지상1층 경로당, 202동 지상1층 MDF실, 203동 지하1층 보육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206동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 207동 지하2층 관리사무소 등이 위치하여 사용 소음 및 시야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203, 206동 지하층에 커뮤니티센터 설치로 이용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202, 207동 후면 단지 주출입구에 문주 설치로 통행, 시야, 불빛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주차장 출입구 램프진입구간 및 차로 유효높이는 2.3m임(2010년 9월 사업시행인가 당시 법적 기준 준수)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 출입은 선큰 및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함.
-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 202, 207동 전면 및 203, 206동 후면에 어린이놀이터1 / 203동, 204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2 설치
  - 주민휴게공간 : 201동 측면 설치

- 광장 : 203, 204, 205, 206동 사이 중앙광장 / 204, 205동 사이에 커뮤니티광장 설치
- 기타 부대시설 : 201동 지상1층 경로당 / 207동 측면 데크하부 근린생활시설 / 203동 지하1층 보육시설 / 203, 206동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 / 206동 지하, 207동 후면 경비실 / 207동 지하2층 관리사무소 설치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03동, 206동 사이 선큰 및 203동, 207동 측벽 옥외 승강기가 설치되어 시설물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시야 간섭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단지는 준공 후 입주 단지로 청약 및 계약 전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세탁기 배치 공간이 평형별 상이하하며, 세탁기 용량별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하기 치수는 도면상 치수로 실시공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84B : 880mm(D) \* 850mm(W)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샤워부스 바닥에는 제외됨.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각 동 세대 발코니 내 3~10F의 대피공간에는 완강기 및 발판이 설치됨.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 사용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 대피공간에 소방배관이 노출되는 타입이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주방 발코니 내에 전열교환기 및 가스보일러 설치로 세탁실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배치 및 그 공간 사용에 있어 불편할 수 있음.
- 세면기 하부에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IX 참고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50171-0003100
시공회사	(주)호반건설	204711-0007384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녹색건축 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서

<b>【건축물 개요】</b> 건축물명: 초안세빛 목동 건축주: 오창제철(주)건축부 1519-주거사업개발부사업부 준공(예정)일: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150-41번지 일동 층 수: 지하 3층, 지상 19층 / 407세대 연 면 적: 40,691.730㎡ 건축물의 주요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합시설 설계자: ㈜삼우인용합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호반건설 공사감독자: ㈜건축사사무소 광장	<b>【인증 개요】</b> 인증번호: G-SEED-C-2022-0150-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2.03.25 ~ 2027.03.24 <b>【인증 등급】</b> 인증등급: 우수등급 인증기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령 제15호
---	---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	57%
에너지자재 및 환경부하(관리)	53%
생태환경	33%
실내환경	70%

2022년 03월 25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1. 공동주택 인증서

###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이 공동주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306호·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이 인증서는 2009년 12월 31일 고시된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등급	2등급	
----	-----	--

분야별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317.89 MJ/㎡·년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배출량(난방)	17.84 kgCO <sub>2</sub> /㎡·년
	총에너지절감률	38.23 %

인증번호	22-공-본-2-0001
건축물명	호반세빛 목동
소재지주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150-41번지 일동

2022년 03월 08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 분양문의 : ☎ 1588-9798

■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vertium.hobanapt.co.kr/hobansummit-seoulsj/final/emh/emodelhouse2.asp>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